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일부개정령안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 “제10조”를 “제10조, 제10조의2”로 하고, “제7조의”를 “제7조, 제7조의2”로 한다.

제5조제4호에 “말하며,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이라 함은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부령인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인증을 받는 것을 말한다.”를 “말한다”로 하고, 제5조제6호에서 “정하는 조정설치면적,”을 “정하는”으로 하며, 제7호의 “녹색건축인증 또는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을”을 “녹색건축인증을”으로 하고, 제8호의 “녹색건축인증 또는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을”을 “녹색건축인증을”으로 한다. 같은조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 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란 건물의 쾌적한 실내환경 유지 및 효율적인 에너지관리를 위하여 에너지 사용내역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최적화된 건물에너지 관리 방안을 제공하는 계획·제어·관리·운영 등이 통합된 시스템을 말한다.

제8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영 제10조의2에 해당하는 공공건축물을 건축 또는 리모델링 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 2.에너지 성능지표의 기계부문 1번 및 2번 항목 배점을 0.9점 이상 획득하여야 한다.

제10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영 제10조의2에 해당하는 공공건축물을 건축 또는 리모델링 하는 경우 건축물에 상시 공급되는 에너지원(전력, 가스, 지역난방 등)중 하나 이상의 에너지원에 대하여 원격검침전자식계량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또는 에너지용도별 미터링 시스템을 설치하여 에너지성능지표 전기설비부문 8번 항목의 점

수를 획득한 경우는 원격검침전자식계량기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제17조제1항의 각호외의 부분에서 “제한기준, 조경면적”을 “제한기준”으로 하고, 제2호를 삭제하고, 제3호를 제2호로 한다. 같은 조 제2항에서 “제3호에”를 “제2호에”로 한다.

별표9, 별지제1호서식, 별지제2호서식을 붙임과 같이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2.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나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

[별표9] 완화기준

1) 건축물에너지 효율인증 등급 및 녹색 건축 인증등급에 따른 건축기준 완화비율

- 건축주 또는 사업주체가 녹색 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른 녹색 건축 인증과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른 에너지효율인증등급을 별도로 획득한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라 건축기준 완화를 신청할 수 있다.

구분	에너지 효율인증 1등급	에너지 효율인증 2등급
녹색건축 인증 최우수 등급	6% 이상 12% 이하	4% 이상 8% 이하
녹색건축 인증 우수 등급	4% 이상 8% 이하	2% 이상 4% 이하

2) 제로에너지빌딩에 해당되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기준 완화비율

- 건축주 또는 사업주체가 제로에너지빌딩 시범사업으로 지정받고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른 에너지 효율인증 1++등급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 건축기준 완화비율 15% 이하를 적용하여 신청할 수 있다.

3) 건축주 또는 사업주체가 1)항, 2)항을 동시에 충족하는 건축물을 설계할 경우에는 각각의 건축기준 완화비율을 합하여 건축기준의 완화신청을 할 수 있다. 단, 완화비율의 합은 15%를 초과할 수 없다.

### 에너지절약계획 설계 검토서

1.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의무 사항					
항 목	채택여부 (제출자 기재)		근거	확 인 (허가권자 기재)	
	채택	미채택		확인	보류
<b>가. 건축부문</b>					
① 이 기준 제6조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를 준수하였다.					
② 이 기준 제6조제2호에 의한 에너지성능지표의 건축부문 1번 항목을 0.6점 이상 획득하였다.					
③ 이 기준 제6조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방법을 준수하였다.					
④ 이 기준 제6조제4호에 의한 방습층을 설치하였다.					
⑤ 외기에 직접 면하고 1층 또는 지상으로 연결된 출입문을 제5조제9호아목에 따른 방풍구조로 하였다.(제6조제4호라목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출입문은 제외)					
⑥ 거실의 외기에 직접 면하는 창은 기밀성능 1~5등급(통기량 5m <sup>3</sup> /h·m <sup>2</sup> 미만)의 창을 적용하였다.					
⑦ 법 제14조의2의 용도에 해당하는 공공건축물로서 에너지성능지표의 건축부문 8번 항목을 0.6점 이상 획득하였다. 다만, 건축물 에너지효율 1+등급 이상을 취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b>나. 기계설비부문</b>					
① 냉난방설비의 용량계산을 위한 설계용 외기조건을 제8조제1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랐다.(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② 펌프는 KS인증제품 또는 KS규격에서 정해진 효율이상의 제품을 채택하였다.(신설 또는 교체 펌프만 해당)					
③ 기기배관 및 덕트는 건축기계설비 표준시방서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 또는 그 이상의 열저항을 갖는 단열재로 단열하였다. (신설 또는 교체 기기배관 및 덕트만 해당)					
④ 공공기관은 에너지성능지표의 기계부문 11번 항목을 0.6점 이상 획득하였다.(「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건축물의 경우만 해당)					
⑤ <u>법 제14조의2의 용도에 해당하는 공공건축물로서 에너지성능지표의 기계부문 1번 및 2번 항목을 0.9점 이상 획득하였다. (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에너지성능지표의 기계부문 16번 항목 점수를 획득한 경우 1번 항목 제외, 냉방설비용량의 60% 이상을 지역냉방으로 공급하는 경우 2번 항목 제외)</u>					
<b>다. 전기설비부문</b>					
① 변압기는 제5조제11호가목에 따른 고효율변압기를 설치하였다. (신설 또는 교체 변압기만 해당)					
② 전동기에는 대한전기협회가 정한 내선규정의 콘덴서 부설 용량기준표에 의한 역률개선용콘덴서를 전동기별로 설치하였다.(소방설비용 전동기 및 인버터 설치 전동기는 제외하며, 신설 또는 교체 전동기만 해당)					
③ 간선의 전압강하는 대한전기협회가 정한 내선규정에 따라 설계하였다					
④ 조명기기를 채택할 때에는 제5조제11호라목에 따른 고효율 조명기기를 사용하고 안정기는 해당 형광램프 전용 안정기를 선택하며, 주차장 조명기기 및 유도등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에 해당하는 LED 조명을 설치하였다.					
⑤ 공동주택의 각 세대내 현관, 숙박시설의 객실 내부입구 및 계단실을 건축 또는 변경하는 경우 조명기구는 일정시간 후 자동소등되는 제5조제11호마목에 따른 조도자동조절 조명기구를 채택하였다.					
⑥ 거실의 조명기구는 부분조명이 가능하도록 점멸회로를 구성하였다. (공동주택 제외)					
⑦ 층별, 구역별 또는 세대별로 제5조제11호하목에 따른 일괄소등스위치를 설치하였다.(실내조명 자동제어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카드키시스템으로 일괄소등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					
⑧ 공동주택의 거실, 침실, 주방에는 제5조제11호카목에 따른 대기전력					

<p>자동차단장치를 1개 이상 설치하였으며,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를 통해 차단되는 콘센트 개수가 제5조제9호가목에 따른 거실에 설치되는 전체 콘센트 개수의 30% 이상이 되도록 하였다.</p> <p>공동주택 외의 건축물은 제5조제11호가목에 따른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를 통해 차단되는 콘센트 개수가 제5조제9호가목에 따른 거실에 설치되는 전체 콘센트 개수의 30% 이상이 되도록 하였다.</p>					
<p>⑨ 법 제14조의2의 용도에 해당하는 공공건축물로서 전력, 가스, 지역난방 등 건축물에 상시 공급되는 에너지원 중 하나 이상의 에너지원에 대하여 원격검침전자식계량기를 설치하였다. 다만 BEMS 또는 에너지용도별 미터링 시스템을 설치하여 에너지성능 지표 전기설비부문 8번 항목의 점수를 획득한 경우는 설치한 것으로 본다.</p>					

※ 근거서류 중 도면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하는 경우는 도면의 일련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 만약, 미채택이거나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더 이상의 검토 없이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확인란의 보류는 확인되지 않은 경우이다. 다만, 자료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당해 건축사 및 설계에 협력하는 해당분야(기계 및 전기) 기술사가 서명·날인한 설치예정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다.

(이하생략) 변경없음

[별지 제2호 서식]

완화기준 적용 신청서		허가번호(연도-기관코드-업무구분-허가일련번호) □□□□ - □□□□□□□□ - □□□□ - □□□□□□	
건축주	성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설계자	성명		면허번호
	사무소명		등록번호
	사무소 주소	(전화번호 : )	
대지조건	대지위치		
	지번		관련지번
	지목		용도지역 /
	용도지구	/	용도구역 /
대지면적(m <sup>2</sup> )		건축면적(m <sup>2</sup> )	
건폐율(%)		연면적(m <sup>2</sup> )	
용적률산정용 연면적(m <sup>2</sup> )		용적률(%)	
완화신청의 근거	해당 항목에 √ 하시기 바랍니다.		
	<input type="checkbox"/> 건축물 에너지효율 등급인증  ( )등급	<input type="checkbox"/> 녹색건축 인증  ( )등급	<input type="checkbox"/> 제로에너지 빌딩인정  ( )
완화 받고자 하는 제한기준	완화기준의 완화비율 범위 내에서 나눠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input type="checkbox"/> 건축물 용적률  ( )%	<input type="checkbox"/> 건축물 높이  ( )%	
완화적용 후 변경기준	적용 전 : %	적용 전 : m	%
	적용 후 : %	적용 후 : m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제15조, 동법 시행령 제11조 및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완화기준 적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해당 예비인증서 및 제로에너지빌딩 인정 공문 사본 1부.			



<p>6. "완화기준" 이라 함은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에서 <u>정하는 조정설치면적</u>, 건축물의 용적률 및 높이제한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완화 적용할 수 있는 비율을 정한 기준을 말한다.</p> <p>7. "예비인증" 이라 함은 건축물의 완공 전에 설계도서 등으로 인증기관에서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u>녹색건축인증 또는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u>을 받는 것을 말한다.</p> <p>8. "본인증" 이라 함은 신청건물의 완공 후에 최종설계도서 및 현장 확인을 거쳐 최종적으로 인증기관에서 <u>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녹색건축인증 또는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u>을 받는 것을 말한다.</p> <p>9.~ 13. (생략)</p> <p>&lt; 신 설 &gt;</p>	<p>6. ----- ----- ----- --- 정하는 ----- ----- ----- -----.</p> <p>7. ----- ----- ----- <u>녹색건축인증</u>을 ----- -----.</p> <p>8. ----- ----- ----- ----- <u>녹색</u> <u>건축인증</u>을 ----- -----.</p> <p>9.~ 13. (현행과 같음)</p> <p>14. "<u>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 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u>"란 <u>건물의 쾌적한 실내환경 유지 및 효율적인 에너지관리를 위하여 에너지 사용내역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최적화된 건물에너지 관리방안을 제공하는 계측·제어·관리·운영 등이 통합된 시스템</u>을 말한다.</p>
--	---



<p>제8조(기계부문의 의무사항) (생략)</p> <p>1.~3. (생략)</p> <p>&lt; 신설 &gt;</p>	<p>제8조(기계부문의 의무사항) (현행과 같음)</p> <p>1.~3. (현행과 같음)</p> <p>4. <u>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영 제10조의2에 해당하는 공공건축물을 건축 또는 리모델링 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 2.에너지 성능지표의 기계부문 1번 및 2번 항목 배점을 0.9점 이상 획득하여야 한다.</u></p>
<p>제10조(전기부문의 의무사항) (생략)</p> <p>1.~4. (생략)</p> <p>&lt; 신설 &gt;</p>	<p>제10조(전기부문의 의무사항) (현행과 같음)</p> <p>1.~4. (현행과 같음)</p> <p>5. <u>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영 제10조의2에 해당하는 공공건축물을 건축 또는 리모델링 하는 경우 건축물에 상시 공급되는 에너지원(전력, 가스, 지역난방 등)중 하나 이상의 에너지원에 대하여 원격검침전자식계량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또는 에너지용도별 미터링 시스템을 설치하여 에너지성능지표 전기설비부문 8번 항목의 점수를 획득한 경우는 원격검침전자식계량기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u></p>

<p>제17조(완화기준의 적용방법) ① 완화 기준의 적용은 당해 용도구역 및 용도지역에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정한 최대 용적률의 <u>제한기준, 조경면적 기준</u>, 건축물 최대높이의 제한 기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적용한다.</p> <p>1. (생략)</p> <p>2. 조경면적 적용방법 「법 및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 조경면적」 × [1 - 완화기준]</p> <p>3. (생략)</p> <p>② 완화기준은 제16조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제1항제1호 내지 <u>제3호에</u> 나누어 적용할 수 있다.</p>	<p>제17조(완화기준의 적용방법) ① ----- ----- ----- <u>제한기준</u> ----- ----- ----- .</p> <p>1. (생략)</p> <p>2. (삭제)</p> <p>2. (생략)</p> <p>② ----- ----- <u>제2호에</u> ----- ----- .</p>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연 락 처

(044) 201-3772, 3771